

한구석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

2021학년도 정시(3월 입학) 재외국민 모집요강



안양대학교
ANYANG UNIVERSITY

■ 목 차 ■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3
2. 전형일정	4
3. 지원자 유의사항	5
4. 원서접수 및 서류 제출 방법	7
5. 전형료 안내	9
6. 지원 대상 및 지원자격	10
7. 전형요소 및 동점자 처리 기준	15
8. 제출서류 안내	16

■ 각종서식

<서식 1> 입학원서 / <서식 2> 자기소개서 / <서식 3> 재학기간 심사표 / <서식 4> 외국학교 현황표 /
<서식 5> 제3국 수학사유서 / <서식 6> 학력조회 동의서(Letter of Agreement)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캠퍼스	계열	대학	학과(전공)		입학 정원	정원 외	완전 정원 외	
						재외국민 (최대선발 인원)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안양 캠퍼스	인문	신학	신학과		52	5	적정인원 「사범계」, 「예술학부」 제외	적정인원 「사범계」, 「예술학부」 제외
			사범계	기독교교육과	30	-		
		언어문화학부	국어국문학전공	30	3			
				영미언어문화전공	30	3		
				러시아언어문화전공	30	3		
				중국언어문화전공	30	1		
				사범계	유아교육과	35		
	예술학부	공연예술전공		22	-			
		음악 전공	피아노	17	-			
			성악	13	-			
			관현악	13	-			
	사회 과학	글로벌경영학과		60	6			
		글로벌경영학과(야간)		63	6			
		관광경영학과(교직과정)		40	3			
		행정학과		35	3			
		행정학과(야간)		30	3			
	자연	스마트 창의 융합	식품영양학과(교직과정)		40	4		
			ICT융합 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40	4		
				정보전기전자공학전공	80	8		
				통계데이터과학전공	35	3		
				소프트웨어전공	40	4		
				정보전기전자공학전공(야간)	33	3		
				통계데이터과학전공(야간)	33	3		
			도시환경바이오 공학부	도시정보공학전공	40	4		
				환경에너지공학전공	40	4		
				도시정보공학전공(야간)	33	3		
			디자인 발명창업학부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30	3		
				화장품발명디자인전공	35	3		
		안양캠퍼스 소개				1,009		
강화 캠퍼스	사회	사회 과학	공공행정학과		30	3		
			관광학과		22	2		
	자연	스마트 창의 융합	ICT융합공학부	융합소프트웨어전공	35	3		
				스마트시티공학전공	35	3		
			도시환경바이오공학부	해양바이오공학전공(교직과정)	35	3		
	강화캠퍼스 소개				157	-		
합 계				1,166	19명 이내	적정인원		

<‘군’별 모집단위>

‘나’군: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국어국문학전공, 영미언어문화전공, 글로벌경영학과(야간), 행정학과, 식품영양학과, 컴퓨터공학전공, 통계데이터과학전공, 정보전기전자공학전공(야간), 환경에너지공학전공, 도시정보공학전공(야간),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관광학과, 스마트시티공학전공, 해양바이오공학전공

‘다’군: 러시아언어문화전공, 중국언어문화전공, 글로벌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행정학과(야간), 정보전기전자공학전공, 소프트웨어전공, 통계데이터과학전공(야간), 도시정보공학전공, 화장품발명디자인전공, 공공행정학과, 융합소프트웨어전공

2 전형일정

구분			일 시	비고
원서접수			2021. 1. 7.(목) ~ 1. 11.(월) 17:00까지	▪ 인터넷 원서접수 - ㈜유웨이어플라이 (http://www.uwayapply.com) - 안양대 입학처 홈페이지 (http://enter.anyang.ac.kr)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을 스캔하여 파일로 업로드
서류 제출 (우편 또는 방문)			2021. 1. 7.(목) ~ 1. 11.(월) 17:00까지	▪ 안양대학교 입학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등기우편: 1. 11.(월) 17:00까지 - 직접방문: 기간 중 매일 17:00까지
제출서류 도착 확인			2021. 1. 13.(수) ~ 1. 18.(월)	▪ 제출서류 확인 - 안양대 입학처 홈페이지 (http://enter.anyang.ac.kr)
합격자 발표			2021. 2. 7.(일)	▪ 합격자 확인 및 등록 - 안양대 입학처 홈페이지 (http://enter.anyang.ac.kr) - 안양대 홈페이지 (http://www.anyang.ac.kr) ▪ 등록금 납부 - 전국 금융기관
최초합격자 등록			2021. 2. 8(월) ~ 2. 10.(수)	
추가 합격자 발표	1차	추가합격자 발표	2021. 2. 10.(수)	
		등록	2021. 2. 11.(목)	
	2차	추가합격자 발표	2021. 2. 11.(목)	
		등록	2021. 2. 12.(금)	
	최종 추가합격자 발표		2021. 2. 12.(금) ~ 2. 18.(목) 21:00	
최종 추가합격자 등록 마감		2021. 2. 19.(금) 16:00		

※ 상기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합격자 및 1차, 2차 추가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3차 및 이후의 추가합격자는 개별 통보 또는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수험생은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 처리합니다.

※ 전형기간(2021. 1. ~ 2021. 2.) 중 지원자 또는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 시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연락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가 본교에 등록을 마친 후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③ 지원자 유의사항

※ 모든 수험생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1. 원서접수 관련 유의사항

▪ 원서접수

-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하나의 전형에서 다수의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전형(정원 외)」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2%(수시 미충원 인원)를 선발하며, 이때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 교육과정 이수자(내국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은 적정인원을 선발합니다.
- 본 대학 사범계학과(기독교교육과, 유아교육과)와 예술학부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합격자(등록 후 환불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이 금지됩니다.

▪ 이중등록 금지

-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정시모집 합격자가 추가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 지원자 개인정보자료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는 입학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입학전형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됩니다.

▪ 제3자 제공

- 수집된 항목 중 합격자에 한하여 신한은행에 등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 관련시스템 정보이용 제공 여부

▪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 정보이용 제공 여부

- 이 시스템은 위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사전에 위반자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지원자격 및 전형일자 확인 여부

- 지원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자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여부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6. 등록금 환불

-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등록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1. 2. 18.(목) 17:00까지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enter.anyang.ac.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입학일[2021. 3. 1.(월)] 이후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 교육부령 1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적용합니다(학기 개시 후 환불자는 자퇴 처리하고 등록금 환불은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본교 전형 절차에 불응하거나 제출서류가 미흡하여 전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형 결과 본교에서 수학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 기타 사항은 본교 입학처(031-463-123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원서접수 및 서류 제출 방법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 개인정보는 지원자의 동의하에 입학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본교 규정에 따라 입학 및 학사 관련 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본교는 원서접수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주)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에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험번호, 전형유형, 지망모집단위, 출신고교명 및 졸업일, 지원자 주소 및 전화번호, 지원자 이메일, 긴급연락처, 전형료/등록금 반환 계좌번호 등

1. 원서접수 방법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enter.anyang.ac.kr)에서 원서접수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주)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에 접속하여 ‘안양대학교’ 선택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반드시 지원자 본인 명의로 회원 가입(보호자 등 타인 아이디로 원서접수 불가)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접수관련 동의서 확인 후 진행
원서 작성	▪ 「2021학년도 재외국민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지원자의 기본 신상정보 및 지원사항을 정확히 기재 ▪ 자격 구분에 본인의 특례 ‘자격구분’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하며, 누락·오기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여권, 외국인등록증에 따라 정확히 기재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지원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재외국민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앞의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뒷자리는 남자의 경우 5999999, 여자의 경우 6999999로 입력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JPEG 형식)로 업로드함
원서 작성사항 확인	▪ 전형료 결제 전 반드시 최종 작성 내용을 확인해야 함
전형료 결제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등을 통하여 전형료 납부 ▪ 인터넷 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된 후에는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변경 불가
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전형유형별 ‘제출서류’를 아래 서류제출 기한까지 등기우편(우편발송 부착용 겹표지 출력) 또는 방문제출 - 제출기한: 2021. 1. 11.(월) 17:00까지 - 제 출 처: (우)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안양동) 안양대학교 수봉관 602호 입학처 ※ 우편발송 부착용 겹표지(주소)를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전형 및 모집단위 변경, 접수 취소 등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초본 등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전형기간 중 지원자 또는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 시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연락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수험표는 원서접수 사이트(<http://www.uwayapply.com>)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마. 인터넷으로 입력한 내용과 사실이 상이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바. 전형료 결제(입금)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3. 서류 제출 방법

- 가. 등기(특급) 우편 발송: **2021. 1. 11.(월)** 17:00까지
(우: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안양동) 안양대학교 수봉관 602호 입학처
 - 나. 방문 제출: **2021. 1. 11.(월)** 17:00까지 안양대학교 수봉관 602호 입학처로 제출
-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내 원서보관함→출력물→제출 서류봉투 표지 출력'에서 표지를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한 후 구비된 서류를 해당란(□)엔 '√' 표시하여 발송해야 함

5 전형료 안내

1. 전형료

전형유형	전형료
재외국민	100,000원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2. 전형료 환불

가.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원서의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며,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전형료 환불 요건

- 원서접수 후 서류제출 기간[2021. 1. 7(목). ~ 1. 11.(월)]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

해당자	해당 자격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차상위계층	아래 확인서(증명서) 중 해당 서류 1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 근로자 확인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 해당 서류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자 기준 발급) 1부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발급) 1부 ※ 단,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친손의 경우 부, 외손의 경우 모 기준

다. 전형료 비례 환불

- 1)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2021. 4. 30.(금)까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 전형료 환불은 원서접수 시 기재한 은행계좌로 송금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입학전형료의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

- 해당 대학 직접 방문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⑥ 지원 대상 및 지원자격

※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개정사항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구분	지원자격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1. 지원자격

12년 이상의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 다음의 유형별 지원자격, 외국학교 인정기준, 재학기간 인정기준, 지원자격별 부모 최저 외국 체류기간에 관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유형	지원자격	기타 인정기준
2% 정원 외	영주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연속, 비연속 불문하고 재직/재학/체류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해외근무자의 자녀 (상사직원, 공무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 근무를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로서 체류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상사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 언론기관특파원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외국정부의 범위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 기타 국가기관·지방정부·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의 범위 - 정부 간의 국제 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배우자 함께 거주)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로서 체류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예): 자영업, 현지 법인 근무, 해외 선교 활동(재직증명서 제출 시 지원가능, 본인 자발적 선교는 제출 불가), 해외 파견 교직원 등	

구분	유형	지원자격	기타 인정기준
완전 정원 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12년 이상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인 자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자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외국에서 이수한 자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자

※ 전 교육과정 이수자(외국인)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표(3급 이상)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외국인 신입생은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 세부 지원자격

<해외재학기간 인정기준>

구분	인정기준
재외국민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가. 전체 이수학기, 원반 및 조기졸업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 적용)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나. 중복학기 인정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판단 예시

예시 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총 23학기로 인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는 G4-2로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는 G9-1로 대체 가능

G11-1은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 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총 22학기로 미인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5-1 중 한 개 학기로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는 G9-1로 대체 가능

G11-1은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해외근무기간 인정기준>

구분	인정기준
재외국민	- 해외근무자(부모 중 1인 이상)는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부모 중 1인 이상)는 해외근무 기간 내[통산 3년(1,095일) 이상]에 학생의 해외재학기간(학생의 해외재학기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6개 학기 재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해당사항 없음

<해외체류일수 인정기준>

구분	인정기준
재외국민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해외체류일수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기준으로 산정함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해외체류일수는 초·중·고등학교 해외 전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기준으로 실제 해외 재학여부를 판단함

<외국학교 재학 인정기준>

- 가.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나. 해당국 교육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인정함. 유아원·유치원,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다.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함[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근무 국가의 지역상황(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3국 수학을 인정함(제3국 수학 사유서 제출)]
- 라. 해외 고교과정에 재학 또는 재학 후에 국내 고등학교 과정으로 신입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 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학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 1개 학년 2학기제)에 맞추어 계산함(단,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나.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제별 자격 인정 여부
 - 해외 1개 국가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고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단, 해외의 1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어도 학제가 동일하지 않은 2개 학교 이상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12년 이상 이수해야 함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제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7 전형요소 및 동점자 처리 기준

1. 전형요소

전형		전형요소
재외국민	영주교포	서류평가 100%
	해외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중·고교 성적, 자기소개서, 수상실적, 어학능력 봉사활동 등 교내·외 활동, 체류국가 대학입학시험 성적 등 각종 실적 증빙자료를 종합 심사합니다.

※ 단, 본교 입학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동점자 처리 기준

전형		처리 기준
재외국민	영주교포	동점자 발생 시 우리대학 2021학년도 전형세부지침에 의해 처리합니다.
	해외근무상사직원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재외국민의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자(내국인)		동점자 전원 선발
북한이탈주민		

8 제출서류 안내

1. 지원 자격별 제출서류

<공통서류>

- ① 입학원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 ② 자기소개서(본교소정양식)
- ③ 재학기간 심사표(본교소정양식)
- ④ 외국학교 현황표(본교소정양식)

<추가서류>

지원자격 제출서류명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 주민
	영주교포	해외근무 자의 자녀	유치과학 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 의 자녀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아포스티유확인서 혹은 재외교육기관 영사확인서)	●	●	●	●	●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재학기간 연, 월, 일 표기)	●	●	●	●	●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	●	●	●	●	●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학생)		●		●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학생) (외국국적취득외국인은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부·모·학생)	●	●	●	●	●(학생)	
여권 사본 (부·모·학생)	●	●	●	●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모·학생)	●	●	●	●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등본]	●		●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	●	●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		
영주권 사본 (부·모·학생)	●					
제3국 수학 사유서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통일부보호대상자 증명서						●
학력확인서(교육감이 학력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 증명서)						●

2.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지원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아래 표의 ●(필수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순서대로 철합니다.
2.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재학기간 심사표, 외국학교 현황표 및 위 항에서 준비한 유형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서류봉투에 넣습니다.
3. 등기우편이나 택배로 발송하는 경우 서류 봉투 겉면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등기우편 및 택배: (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37번길 22(안양동) 안양대학교 입학관리과
 - 방문제출: 안양대학교 입학처(수봉관 602호) 17:00까지 / 공휴일 제외
4. 제출기한: **2021. 1. 11.(월)** (마감당일 17:00 도착분까지 유효)
5. 입학원서, 재학기간 심사표 및 외국학교 현황표,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시 작성해서 출력하는 것만 인정이 되므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아래 절차 중 하나를 거쳐야 하며, 사본 제출자는 합격 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은 후 제출
 - 원본과 사본 모두를 지참하여 본교 입학처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은 후 제출
9.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입학일 전까지 고교 졸업증명서를 입학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지정된 기간 안에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시 일정상 부득이하게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외국민 서류 제출 관련 아포스티유 협약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

- 명칭: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 간 협약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방법

- 외국에서 초·중·고등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고 귀국하여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가. 외국에서 재학·졸업하였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발급 받은 후,
나.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아포스티유확인서 발급기간은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2)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닌 경우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대상

1)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2)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중 해당국 공증기관이 공증한 문서

※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서’ 효력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협약가입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는 국내에서 우리나라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은행, 관공서, 회사, 법률사무소, 학교 등 외국공문서를 자주 대하는 기관 또는 업체는 협약가입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공증문서)에 대해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 외국공문서에 부착된 아포스티유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해당국가 주한공관 또는 외교통상부에 해당 아포스티유의 일련번호, 서명자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19. 5. 14. 현재)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필리핀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바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협약에 의한 APOSTILLE 확인서 양식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①)	
3. acting in the capacity of (②)	
4. bears the seal/stamp of (③)	
Certified	
5. at (④)	6. (⑤)
7. by (⑥)	
8. No (⑦)	
9. Seal/stamp (⑧)	10. Signature (⑨)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③ 문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 ⑥ Apostille 발급 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탬프, ⑨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 배경 디자인은 상이할 수 있으나 확인서(Apostille) 서식은 협약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을 사용	

※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인 www.0404.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영사콜 센터(02-2100-7500, 02-3210-04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원서

■ 정시

										수험번호															
지원자	성명	[한글]										[영문]										사 진 (3cm × 4cm)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성별	남 () / 여 ()										국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지원학과(전공)	안양() / 강화 ()캠퍼스										학과													
	전적 고등학교 현황	고교명	[한글]										[영문]												
		고교주소																							
		졸업일	년 월 일										졸업() / 졸업예정()												
	최저 한국어능력기준	자격	▪ 없음																						
		기관명											급수		() 급		취득일자		년 월 일						
	지원자 주소																								
지원자격구분	재 외 국 민																								
	☐ A	영주교포										☐ D	기타 재외국민 자녀												
	☐ B	해외근무자의 자녀										☐ E	전 교육과정 이수자(내국인)												
	☐ C	유치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 F	북한이탈주민												
전형기간 중 연락처	휴대폰	() - - -										전화		() - - -											
	E-mail																								
보호자	성명											지원자와의 관계													
	보호자 주소																								
	연락처	() - - -										직업													
	근무처											직위													
등록금 반환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안양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 본 양식은 인터넷 원서접정시 작성해서 출력하는 것만 인정이 되므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말 것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지원자 정 보	전형유형		지원학과(전공)	
	수험번호		출신고교	
	성 명		출신고교 소재국가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enter.anyang.ac.kr>) 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2.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지정한 분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자 이내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기소개서는 중요한 전형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제출한 자기소개서는 유사도 검색자료로 활용됩니다.
5. 우리대학이 자기소개서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별도 지정일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6. 자기소개서 내용 중 허위사실 기재, 표절, 대리작성, 위조서류 제출 등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확인 서약 ((□안에 √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이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하였음
2. 본인은 귀교가 자기소개서와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임
3. 본인은 이 자기소개서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 대리 작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동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지 원 자 _____ (서명)

안양대학교 총장 귀하

1. 해외 수학과정(중·고교)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하여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기술 하세요. (500자 이내)

2. 다음 두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 로 표시한 후 답하세요. (500자 이내)

☐ 자신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어떤 부분이 성장하였는지 기술하세요.

☐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몰입해 본 활동은 무엇이며, 그 활동을 통해 자신이 성장한 부분은 무엇인지 기술하세요.

3. 지원 학과(전공)에 진학하기 위해 기울인 학업 노력과 다양한 활동(리더십, 봉사, 동아리, 연구, 취미, 기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500자 이내)

4. 입학 후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 (500자 이내)

수험번호	2021학년도 정시모집 재외국민 전형 재학기간 심사표														
------	-------------------------------	--	--	--	--	--	--	--	--	--	--	--	--	--	--

성 명			생년월일			국적			연락처	Home :		H-P :					
자 격 구 분	☐ 영주교포 ☐ 해외근무자의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기타 재외국민 자녀(☐ 현지법인 ☐ 자영업자 ☐ 기타) ☐ 전 교육과정 이수자(☐ 내국인) ☐ 북한이탈주민																
학 교 명(영문)	재학기간		학교소재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출국기간 (방학기간 포함)
	기 간	재학년수	국가명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년 개월															~
	~	년 개월															~
	~	년 개월															~
	~	년 개월															~
	~	년 개월															~
	~	년 개월															~
	~	년 개월															~
	~	년 개월															~
고등학교까지 총재학기간	년 개월	전체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중·고과정 외국학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국내고교 재학기간				년 개월				

구 분	외국거주기간		소재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특이사항
	기 간	거주년수	국가명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부(父) 성명 ()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모(母) 성명 ()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위 기재 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지원자와의 관계 :

수험번호		2021학년도 정시모집 재외국민 전형 외국학교 현황표
------	--	-------------------------------

성 명		생년월일		국적		연락처	Home :	H-P :
자 격 구 분	☐ 영주교포 ☐ 해외근무자의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기타 재외국민 자녀(☐ 현지법인 ☐ 자영업자 ☐ 기타) ☐ 전 교육과정 이수자(☐ 내국인) ☐ 북한이탈주민							

학교명	국가명	소재지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홈페이지	FAX	비 고

- ※ 재학한 외국소재 학교를 심사표에 기재한 순서대로 기재
- ※ 학교명 및 주소는 영문으로 정확히 기재
- ※ 전화번호 및 Fax 번호는 국가코드, 지역코드를 포함하여 기재

제3국 수학사유서

수험번호		성명	
지원학과			
전화번호		휴대전화	

※ 학생의 수학국가가 보호자의 근무국과 상이할 경우 그 사유를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근무국가		학생 수학국가	
보호자의 해외근무기간		학생의 해외수학기간	

※ 특례기간에 해당하는 보호자의 근무국가와 학생의 수학국가가 복수일 경우 각각의 국가명과 국가에서의 수학기간을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국 수학 사유	수학사유 심사후 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 (인)

본 인 : (인)



ANYANG UNIVERSITY

Office of Admission, Anyang University

Tel 82-31-463-1234~7

22 Samdeok-ro 37beon-gil, Manan-gu, An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Fax 82-31-467-0760

LETTER OF AGREEMENT

To whom it may concern :

I attended (*).

I have applied to **Anyang University** in Anyang, Gyeonggi, Korea for the 2021 academic year and I agree that **Anyang University** can rightfully make a request to you for my school record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ask you to provide full assistance to **Anyang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Name : * _____ Signature : * _____

Date of birth : * - -

Date of admission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 * - -

Date of graduation (transfer to another school) : * - -

Date : - -

※ 지원자는 재학한 해외학교 수만큼 본 양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자 표기 Example) 07 - 10 - 2020
(월:M) (일:D) (년:Y)